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|
| 의안<br>번호 | 44 |
|----------|----|

제출일자 : 2001. 12. 4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사유

우리구 지명위원회의 운영은 측량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나 업무처리와 관련이 적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위원회 운영에 혼란이 있어, 업무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부서로 담당부서를 조정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“총무과장”에서 “지적과장”으로, “행정담당주사”를 “지적담당주사”로 함(안 제2조제4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측량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

나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나. 합 의 : 지적과 합의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지적과장”으로, “행정담당주사”를 “지적담당주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| 현<br>행   | 개<br>정<br>안   |
|--|---|
| 제2조(구성) ①~③ (생략)<br>④간사는 <u>총무과장</u> 이 되고,<br>서기는 <u>행정담당주사</u> 가 된다 | 제2조(구성) ①~③(현행과 같음)<br>④간사는 <u>지적과장</u> 이 되고,<br>서기는 <u>지적담당주사</u> 가 된다 |